

「구미시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김영태 의원 외 10명

2. 제안이유

-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 역량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골목상권 지정기준, 지정 및 지원계획수립(안 제4조~제6조)
- 골목상권 사업지원, 사업평가, 지정 취소(안 제7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, 제3조, 「유통산업발전법」 제2조3호, 제2조제4호,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 제1호, 제2조제2호, 제2조제2호의2, 제2조제4호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(불임)
-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3. 5. 3. ~ 5. 8.)결과 의견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개별 소상공인들을 조직화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

○ 검토 결과,

-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, 골목형상점가 등 국가지원사업에 사업대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상권 및 상점가에 대하여 골목상권으로 지정하여 소상공인들이 자발적으로 상권발전의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고, 이를 통해 보다 촘촘한 소상공인 지원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